



수신자 : 요양기관장
(경유)

제 목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관련 차등적용상병 외래환자 처방전에 본인부담률 구분기호(V252) 기재 의무에 따른 안내문 송부(2차)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결			지시	
접	일자	2017. 6. 5.	결재	관리부장
발령		1>28		심사팀장
담당자	장운경	김영		심사계장
			참	

협조: 약제라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52개 차등적용상병의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시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기재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16.11.7.)이후 해당상병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예정 2회차 안내문을 불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약국 접수 완료 후

3. 아울러 해당 지침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상병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심사정보 > 급여기준 에서 확인 가능)

불임 1. 안내문_V252

2.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_보험급여과-2664호.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재

담당 박민주

차장 황인숙

부장 남영현

실장

전결05/31

안학준

협조

공람: 이한영, 김수영, 김재민

시행 심사관리부-1465

(2017.05.31.) 접수

()

우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서초동) / www.hira.or.kr

전화 02-2182-3810 전송 02-6710-5782 / milklotion@hira.or.kr

/ 공개

심평원의 청렴지수 고객의 행복지수 "행복의 전화 1644-2000"

합: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재활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응급실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장영기

피부비뇨기과: 이영우.

치과: 김민

소아과: 이영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특정기호_V252) 기재관련 안내 [2차]

1. 위원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
(대통령령 제27508호, 2016.9.22.)
-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7호, 2016.6.30.)
-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2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1호, 2016.5.11.)
- 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8호 및 제9호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3. 2011.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의무기재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6.11.7.자로 시행됨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대상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제24조 후단에 따라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에 따른 원외처방전 발급시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2016.11.7.진료분부터 사후관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보험급여과-2664호, 2011.8.4)에 의거 52개 차등적용 질병의 주상병에 대한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적용착오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사후관리(정산) 예정입니다.
- 2015년 진료분 확인결과, 원외처방전 발행시 V252 미기재 기관이 다수 확인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기타 협조사항 >

- 주상병이 경증질환인 경우 원외처방전에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가 기재되는지 등 위원회 프로그램 점검을 하여 불이익이나 청구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외처방전 발행시 “조제시 참고사항(해당위치)” 란이 아닌 위치에 본인부담 구분기호 (V252)를 기재하여 조제기관에서 적용착오가 발생하니 지정된 위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처방전서식 참조)

6. 의문사항은 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 : 02-2182-3810, 3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0. 6.>

처 방 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 기관	명 칭		
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팩스번호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 법

주사제 처방명세([]원 내 조제, []원 외 처방)	조제 시	본인부담
	참고 사항	구분기호
		V252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방의 변경·수정·확인·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I. 개 요

- ☐ (목적) 본 지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 제6조의 적용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5와 같다.

- ☐ (적용대상 질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5에 해당하는 질병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질병(이하 '차등적용 질병'이라 한다)이며, 동일한 4단 질병분류기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 별표5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해당질병은 모두 적용대상임

◇ 예시) B35.2의 대표 질병명인 '손백선'만 질병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손백선'과 4단 질병코드가 동일한 '손의 피부사상균증', '손 도장부스럼'도 차등적용 질병임

- ☐ (적용범위) 차등적용 질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이라 한다)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의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 또는 의약분업에의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II.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세부적용 방법

1. 복합상병(주상병, 부상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 ☐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 차등적용 질병이 주상병이고, 타상병이 부상병일 경우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이고, 타상병이 주상병일 경우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이고, 타상병이 주상병일 경우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
- 차등적용 질병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 차등적용 질병 외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예시) 고혈압과 급성세기관지염으로 대형병원 동일의사에게 외래진료 받을 경우, 고혈압이 주상병이면 40~50%의 본인부담률, 급성세기관지염이 주상병이면 30% 본인부담률 적용

구분	차등적용 질병 + 타 질병			
	동일의사		진료과 각각	
	차등적용 질병(주상병) 타질병(부상병)	차등적용 질병(부상병) 타질병(주상병)	차등적용 질병	타 질병
본인 부담률	50%(40%)	30%	50%(40%)	30%

2.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인하 산정특례질환과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 동일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
-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
 - 차등적용 질병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인하 산정특례질환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

◇ 예시) 폐암환자가 검기로 대형병원의 동일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 5~10%의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진료과가 다를 경우에는 검기에 대해서는 40~50%의 본인부담률 적용

구분	차등적용 질병 + 본인부담 인하 산정특례 질병		
	동일의사 본인부담인하 산정특례질환, 차등적용 질병	진료과 각각	본인부담 인하 산정특례 질병
본인부담률	5%,10%	50%,40%	5%,10%

3. 그 외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타 요양기관에서 의뢰되어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시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 최종진단명 확인 이전의 대형병원 외래환자 : 확인 전 질병분류기호가 차등적용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 * 확인 전 질병은 대부분 4단 코드 내 .8(기타) 또는 .9(상세불명)으로 코딩됨
-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외래환자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3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0~50%

* 응급의료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

-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수술을 받거나, 입원진료후 퇴원한 환자가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진료받는 경우 :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해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손 백선(B3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2	와상 백선(B35.5)	V252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해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3	신장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4)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7)	V252
	상해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V252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4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5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6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7	결막염(H10.0~H10.9)	V252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V252
10	외이의 연조직염(H60.1)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V252
	기타 외이도염(H60.8)	
11	상해불명의 외이도염(H60.9)	
	양성 고혈압(I10.0)	V252
	상해불명의 고혈압(I10.9)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V252
12	급성 비인두염(J00)	V252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V252
14	급성 인두염(J02.0~J02.9)	V252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5	금성 편도염(J03.0~J03.9)	V252
16	금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V252
17	다발성 및 상세포염 부위의 금성 상기도 감염(J06.0~J06.9)	V252
18	상세포염의 금성 기관지염(J20.9)	V252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V252
20	만성 비인두염(J31.1)	V252
21	만성 인두염(J31.2)	V252
22	만성 부비동염(J32.0~J32.9)	V252
23	천식(J45.0~J45.9)	V252
24	위-식도역류병(K21.0~K21.9)	V252
25	출혈 또는 전공이 없는 금성 위궤양(K25.3)	V252
26	출혈 또는 전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V252
27	출혈 또는 전공이 없는 금성 상세포염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V252
28	출혈 또는 전공이 없는 만성 상세포염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V252
29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금성인두 상세포염 상세포염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V252
30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V252
31	소화불량(K30)	V252
32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33	불확정 결장염(K52.3)	V252
34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V252
35	상세포염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V252
36	자극성 장증후군(K58.0~K58.9)	V252
37	변비(K59.0)	V252
38	기능성 설사(K59.1)	V252
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V252
40	항문연축(K59.4)	V252
41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V252
42	상세포염의 기능성 장장애(K59.9)	V252
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V252
44	상세포염의 간질환(K76.9)	V252
45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V252
46	상세포염의 아토피피부염(L20.9)	V252
47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V252
48	상세포염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V252
49	두드러기(L50.0~L50.9)	V252

구분	대 상	특정기호
35	기타 관절염(M13.0~M13.9)	V252
36	기타 척추증(M47.8)	V252
37	상세포염의 척추증(M47.9)	V252
38	상세포염의 경추간판장애(M50.9)	V252
39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V252
40	척추절절(M51.4)	V252
4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V252
42	상세포염의 추간판 장애(M51.9)	V252
43	기타 등통증(M54.8)	V252
44	상세포염의 등통증(M54.9)	V252
45	석회성 힘줄염(M65.2)	V252
46	방아쇠 손가락(M65.3)	V252
47	기타 운할막염 및 힘줄운할막염(M65.8)	V252
48	상세포염의 운할막염 및 힘줄운할막염(M65.9)	V252
49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V252
50	이두근 힘줄염(M75.2)	V252
51	상세포염의 어깨병변(M75.9)	V252
5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V252
53	상세포염의 골부착부병증(M77.9)	V252
54	근통(M79.1)	V252
55	지방대의 비대(M79.4)	V252
56	사지의 통증(M79.6)	V252
57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V252
58	상세포염의 연조직 장애(M79.9)	V252
59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60	금성 방광염(N30.0)	V252
61	상세포염의 방광염(N30.9)	V252
62	만성전립선염(N41.1)	V252
63	금성 질염(N76.0)	V252
64	금성 외음염(N76.2)	V252
65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V252
66	폐경기 후 위축성 질염(N95.2)	V252
67	상세포염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V252
68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V252
69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V252
70	기타 및 상세포염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V252
71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V252
72	기타 및 상세포염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V252
73	기타 및 상세포염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74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V252
75	기타 및 상세포염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V252